부 산 가 정 법 원

제 3 가 사 부

심 판

사 건	2016느합200050 재산분할
청 구 인	갑 (1962년생, 여)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 대 방	을 (1960년생, 남)
	주소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4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은 2011. 7. 28.부터 2012. 2. 19.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2008. 11. 2. 전통불교조계종 000(2013. 10. 11. 전통불교조계종 ***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을 마치고 ***의 사찰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 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6. 10.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교부하고, 상대방도 그 합의서 하단에 "금일 이후로 청구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두 불문에 붙인다."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

> 합의서
> 을이 청구인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고, 위 금액에서 산청 땅 살 때 청구인 돈 빌려간 돈 3천만 원하고 00스님이 마이너스 2천만 빌려간 돈하고 포함해서 1억 원이다.
> 00스님 빌려간 돈 마이너스 2천 제하고 청구인한테 8천만 원 준다.
> 청구인한테 마이너스 3천만 원 을이 갚기로 함.
> 청구인 앞으로 명의는 모두 돈 주는 동시에 이전한다.
> 어제까지 카드(농협) 지출은 을이 함.
> ***와 을의 절에 모두 어떠한 일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이사하는 날: 10월 10일

라. 청구인은 2014. 8. 8. 상대방의 자녀인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같은 B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을, C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을, 전통불교조계종***에게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그 무렵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9. 17. 다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고 한다), 2014. 10. 20. ***의 사찰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의 대표자는 2014. 12. 17. 청구인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

[상대방 작성 부분] 현재 있는 일체 모든 가재도구는 청구인이 알아서 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청구인 작성 부분] 청구인 본인도 금일 이후로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든 일들을 불문에 붙일 것을 약속함. 단, ₩ 8,000만 원은 2014년 9월 17일 입금 완료.

바.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제1, 2차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제1, 2차 합의를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한다며 A, B,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21***호, 창원지방법원 2016나50***호).

사. 청구인은 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 9. 30.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심문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를 퇴거한 2014. 10. 20.경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며 청구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상대방

청구인과 상대방은 *** 화주보살(공양 등 사찰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보살)과 스님의 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고,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4. 6. 10.경 완전히 해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적용되는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본소), 1386(반소)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

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4. 6. 10.경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16. 9. 30.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제1, 2차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합의서 작성일을 기점으로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두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본인 앞으로 된 명의를 모두 이전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여러 면에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7. 7. 20.

재판장 판사 천 종 호

판사 이 미 정

판사 이 호 철

목 록

이하 생략